2015. 9.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번호 제2015-약관-441 호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특약」(구 외환은행)**

|  |
| --- |
|  |

**제1조 적용범위**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구 외환은행)(**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시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구 외환은행) 및 '거치식예금약관'(구 외환은행)**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합니다.

**제3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개월이상 60개월 이내에서 월,일로 정합니다.

**제4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로 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6조 재예치**

①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 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 --- |
| **-** 퇴직연금정기예금 재예치형 특약 -  퇴직연금정기예금 약관 제 6 조 ①에 따라, 동 예금의 매 만기일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상기 ①에도 불구, 거래처가 재예치 의사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으며, 거래처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

**제7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율결정일은 예금일 및 매 갱신일로 합니다.

② 이 예금의 이율은 매 이율결정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에 따라 변경 적용합니다.

③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④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8조 중도해지이율**

①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함이 원칙이나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또는 갱신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 및 당행이 수탁자인 퇴직연금계약(이하 퇴직연금계약)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인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1.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중도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라.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천재∙사변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3.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4.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시

5. 퇴직연금제도의 동일 사업자내의 제도 전환

6.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 발생시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급여를 연급지급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분할해지**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분할해지 횟수에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만기일 전 분할해지 하는 경우 분할해지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8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10조 거래제한**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양수도가 불가하며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기타**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부칙(제정)

이 특약은 201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

이 특약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

이 특약은 201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3)

이 특약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